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 條例증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1992. 9. 1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류병노의원의 5인

나. 발의일자 : 92. 9. 14

다. 회부일자 : 92. 9. 14

라. 상정일자 : 92. 9. 17

2. 제안설명 요지

92. 9.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2. 9. 17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의회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출장이나, 출석 및 출장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건의 촉구안의결)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의 철도운임과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을 시·도(광역시)의회 의원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할 수있도록 건의 촉구 결의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첨 부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건의 촉구안 1부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 條例증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2. 9. 14
제안자 : 류병노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92. 9.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2. 9. 17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별표 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의 여비 지급시에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함.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 條例중改正條例(案)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의 출석 및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에 의한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 탁 료 (1야당)
의 장 ·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 지 5,000 을 지 4,500	갑 지 17,000 을 지 15,000	갑 지 11,000 을 지 9,500	8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 지 4,500 을 지 4,000	갑 지 14,000 을 지 11,500	갑 지 10,500 을 지 9,000	800

〈비 고〉

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요금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p> <p>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3)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2제1항 관련)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출도 수입</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연 료 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 비 (1일당)</th> <th>식 탁 료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대 외 국</td> <td>1등급</td> <td>2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특 저 4,500 갑 지 4,500 을 지 4,000</td> <td>특 저 16,000 갑 지 15,000 을 지 13,500</td> <td>특 저 10,500 갑 지 10,000 을 지 9,000</td> <td>800</td> </tr> <tr> <td>내 국</td> <td>2등급</td> <td>2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특 저 4,000 갑 지 4,000 을 지 3,500</td> <td>특 저 13,500 갑 지 11,500 을 지 10,500</td> <td>특 저 10,000 갑 지 9,500 을 지 8,500</td> <td>8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p>1. "특저"는 서울특별시·직할시·과천시·경주시·및 제주시도, "갑지"는 도청소재지·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의정부시·안산시·구리시·원주시·강릉시·속초시·춘천시·여주시·군산시·목포시·여주시·나주시·구미시·포항시·영천시·마산시·울진시·진주시·서귀포시로, "을지"는 기타지역으로 한다.</p> <p>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가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p> <p>3. 철도승차권분류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승차권분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승차를 지급한다.</p>	구분	출도 수입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연 료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식 탁 료 (1일당)	대 외 국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 저 4,500 갑 지 4,500 을 지 4,000	특 저 16,000 갑 지 15,000 을 지 13,500	특 저 10,500 갑 지 10,000 을 지 9,000	800	내 국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 저 4,000 갑 지 4,000 을 지 3,500	특 저 13,500 갑 지 11,500 을 지 10,500	특 저 10,000 갑 지 9,500 을 지 8,500	800	<p>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시의 여비)</p> <p>①출석 및 출장..... 별표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지급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2제1항 관련)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출도 수입</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연 료 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 비 (1일당)</th> <th>식 탁 료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외 국 부 위 장</td> <td>1등급</td> <td>2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갑 지 5,000 을 지 4,500</td> <td>갑 지 17,000 을 지 15,000</td> <td>갑 지 11,000 을 지 9,500</td> <td>800</td> </tr> <tr> <td>내 국</td> <td>2등급</td> <td>2등급</td> <td>정액</td> <td>정액</td> <td>갑 지 4,500 을 지 4,000</td> <td>갑 지 14,000 을 지 11,500</td> <td>갑 지 10,500 을 지 9,000</td> <td>8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p>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p> <p>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가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p> <p>3. 철도승차권분류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승차권분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승차를 지급한다.</p> <p>4. 수로여행시 레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요 및 제1호 여당자에 대하여는 특요,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급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예년항만법정의 인·허가금을 기준으로 한다.</p>	구분	출도 수입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연 료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식 탁 료 (1일당)	외 국 부 위 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갑 지 5,000 을 지 4,500	갑 지 17,000 을 지 15,000	갑 지 11,000 을 지 9,500	800	내 국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갑 지 4,500 을 지 4,000	갑 지 14,000 을 지 11,500	갑 지 10,500 을 지 9,000	800
구분	출도 수입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연 료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식 탁 료 (1일당)																																															
대 외 국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 저 4,500 갑 지 4,500 을 지 4,000	특 저 16,000 갑 지 15,000 을 지 13,500	특 저 10,500 갑 지 10,000 을 지 9,000	800																																															
내 국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 저 4,000 갑 지 4,000 을 지 3,500	특 저 13,500 갑 지 11,500 을 지 10,500	특 저 10,000 갑 지 9,500 을 지 8,500	800																																															
구분	출도 수입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연 료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식 탁 료 (1일당)																																															
외 국 부 위 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갑 지 5,000 을 지 4,500	갑 지 17,000 을 지 15,000	갑 지 11,000 을 지 9,500	800																																															
내 국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갑 지 4,500 을 지 4,000	갑 지 14,000 을 지 11,500	갑 지 10,500 을 지 9,000	80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조항 개정 건의 촉구안

1992. 9. 17

운영위원회

1. 건의 촉구안 결의 요지

가. 제안이유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시·도(광역시)의회의원과 구·시·군(기초)의회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규정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함.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내용 중 시·도의회 의원과 차이를 둔 아래의 내용을 동일 수준으로 개정토록함.

- 철도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2. 건의 촉구안 조치과정

집행부서에서 중앙 기관으로 건의 후 회신결과를 의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요구

3. 첨부 :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제15조 관련)내역 1부

(별표 5)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 (제1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 탁 료 (1야당)
		시 · 도	의 장 ·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의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시 · 군 · 구 · 자치구	의 장 ·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4,500	14,000	10,500	800	

<비 고>

1.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철도 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 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을 해당 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